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원	은 신청인이 적		l다.						
접수번호		접수일			처리	처리기간 1일			
학원설립 • 운영자	성명				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				
의전설립· 단당자	주소 (전화번호:)	
명칭						교습과정			
등록번호		최초등록일							
재발급 사유	[] 잃어버린 경우 [] 못 쓰게 된 경우								
분실 사유 (잃어버린 경우에만 작성합니다)									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원설립·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									
						년	2	월 일	
신청인(학원설립 • 운영자)							(서명	병 또는 인)	
○○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									
신청인 (학원설립 • 운영자) 제출서류	1. 학원설립·운영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)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. 학원설립·운영등록증명서(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						수수료	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학원 등록(변경등록)대장							없음	
처리절차									
재발급신청서 작성	→ 접수 및 검토 →				→	재교부			
신청인	처 리 기 관 처 리 기 (교육지원청) (교육지								